



## 통·이·반 의 명칭과 관할구역

###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	1	33의 18, 34의 1~18, 479, 747, 514의 1~12, 473의 8, 9, 658의 5~39, 729, 481, 755의 3.5, 444의 1~6, 444의 8~37, 444의 39~41
		2	798~800, 802~810
		3	814~825
		4	827~828, 831~832, 834~844, 846~850
		5	830의 1
		6	852~876, 879, 882~884
	2	1	74의 1~22
		2	72의 10, 65의 2.4.6.7.12.28.29.94.
		3	401의 1~9, 398의 12, 405의 4
		4	77의 4, 77의 103
		5	77의 4~38
	3	1	64의 8~15, 64의 31~33, 65의 50~53, 65의 71~73
		2	63의 66~72, 75, 77, 77의 4~59, 61~69, 77의 4~48, 50~54
		3	63의 9~25, 63의 59, 87~131, 77의 64~66
		4	63의 4, 63의 8, 57, 64의 18, 20, 30, 75의 9~13, 63의 143~145.152
		5	64의 17~20, 65의 1, 65의 4.5, 63의 8~11, 63의 13~27, 63의 30~58, 63의 6~24
	4	1	61의 46~60, 63의 4, 64의 10, 25
		2	63의 75~85, 95, 119
		3	7의 3~27, 10의 3, 64의 11~16, 64의 21~29, 64의 35~49
		4	10의 4~7, 10의 9~11
		5	7의 3~5, 17, 7의 24~58, 7의 59
	5	1	745의 12, 745의 17~27, 747의 17.19, 479의 51~53, 479의 64, 479의 56.57.60.61, 479의 63~70, 479의 117.120.129, 479의 131, 744의 1.13.32, 745의 29, 747, 747의 20
		2	479의 40.41.45.48, 479의 73~76, 479의 104~107, 479의 110~111, 479의 113, 485번지 일대, 744의 9, 479의 10.12.27, 479의 32~35, 479의 78-84, 479의 38, 479의 86~89, 479의 91~93, 479의 95~102
		3	784, 786~787, 789~795, 798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6	1	431의 6,10, 433의 5~19, 439의 8~51, 441의 1~6, 427의 2~11, 427의13~15, 427의17
		2	434의 7~15, 438의 6~8, 439의 17~35, 758의 14~18
		3	437의 6~15, 441의 14~16, 758의 24~27, 442의 5~26
		4	430의 4~29, 434의 19, 435의 5~27, 442의 5, 442의 23~25, 758의 37~51, 783의 4, 443, 444의 7.38, 755의 1.4.11.17.18, 756의 1~16, 757의 1~8
	7	1	63의 27, 78의 8
		2	406의 1
		3	40의 1
		4	63의 11, 63의70~74, 63의 134, 63의140, 63의150, 75의11, 64의 30, 405의5
	8	1	427의 12
		2	427의 1
		3	427의 16
		4	430의 4~22, 534의 19, 434의 20, 435의 5~27
	9	1	69의 2 현대아파트 101동 전체
		2	69의 2 현대아파트 102동 전체
		3	69의 2 현대아파트 103동 전체
	10	1	69의 2 현대아파트 104동 전체
		2	69의 2 현대아파트 105동 전체
		3	69의 2 현대아파트 106동 전체, 상가
	11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1동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1~8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9~16호	
12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4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5~8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9~12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3~16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3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3호, 상가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4~6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7~9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0~12호
	14	1	656 동영임대아파트 101동 전체, 상가
		2	656 동영임대아파트 102동 전체
미장동	15	1	380의 9~22, 381의 101~120, 381의 67~120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4	17의 11, 18의 15, 433, 450, 457, 445, 549, 563, 579, 582, 585, 617, 51의 56, 52의 21~30, 51의 2~999, 55, 56, 49, 61의 20, 62의 43, 493, 494, 532, 289의19~329의1, 산62의1~87의2, 29의1
	16	1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1동 101~1504호
		2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2동 101~1304호
		4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2동 105~1007호
	17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1동, 상가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2동
		3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3동
	18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4동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5동
	19	1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1동 전체, 상가
		2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2동 전체
		3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3동 1~4호
		4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3동 5~8호
	20	1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1동 전체, 상가
		2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2동 전체
		3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3동 전체
4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4동 전체	
5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5동 전체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지곡동	21	1	259 동신아파트 101동 101~1504호
		2	259 동신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259 동신아파트 102동 101~1504호
		4	259 동신아파트 102동 105~1508호
		5	259 동신아파트 103동 101~1506호
	22	1	259 동신아파트 104동 101~1504호
		2	259 동신아파트 104동 105~1508호
		3	259 동신아파트 105동 101~1504호
		4	259 동신아파트 105동 105~1508호
		5	259 동신아파트 106동 101~1503호
		6	259 동신아파트 106동 104~1506호, 동신상가
	23	1	259의 10, 487~499의 6
		2	500~506의 15
		3	507~516의 15
		4	517~522의 13
	24	1	523~537의 15
		2	538~550의 3, 547의 3
		3	554~560의 2, 553
		4	561~568의 10
	25	1	251, 252, 310, 363~374, 392~395, 401~409, 431~434
		2	43~50, 70, 80, 93, 94, 164, 194, 353, 12, 27
		3	81~83, 89, 93, 143, 250, 901, 149-6
		4	289의19~329의1, 산62의1~87의2, 29의1
	26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1동, 상가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3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4동
	27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5동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6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7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8동	
5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9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지곡동	28	1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1동101호 ~ 1408호, 상가
		2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2동101호 ~ 1508호
		3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3동101호 ~ 1508호
		4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4동101호 ~ 1508호
수송동	29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1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2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3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4동, 상가
		5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5동
	30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6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7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8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9동
	31	1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1동, 상가
		2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2동
		3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3동
		4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4동
	32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1동, 상가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2동
		3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3동
4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4동	
33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5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6동	
34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7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8동	
35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1동 , 상가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2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3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4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5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36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6동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7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8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9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10동
	37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1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2동 , 상가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3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4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5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6동
	38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7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8동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9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0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1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2동
	동계	38	15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1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1동 1 ~ 4호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1동 5 ~ 8호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2동 1 ~ 8층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2동 9 ~ 15층
	2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3동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7동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8동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9동
	3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4동 1 ~ 4호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4동 5 ~ 10호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5동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6동
	4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1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1동 5 ~ 10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1 ~ 4호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5 ~ 10호
		5	489 금호타운아파트 상가, 487의 7, 487의 9, 487의 11
	5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5 ~ 10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4동 1 ~ 4호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4동 5 ~ 10호
	6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5 ~ 8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6동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동 1 ~ 4호	
5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동 5 ~ 8호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나운동 (나운2동)	7	1	401 삼성아파트 101동, 102동
		2	401 삼성아파트 103동, 104동
		3	401 삼성아파트 105동, 106동
		4	401 삼성아파트 상가, 346의 20, 365, 365의 2, 367, 368의 1 ~ 3, 368의 5, 368의 8, 369, 369의 1, 370, 370의 1, 370의 3, 371, 372의 1, 373의 1, 374, 374의 1, 374의 3, 375의 2 ~ 3, 375의 6 ~ 7, 375의 9, 376, 376의 1 ~ 2, 376의 4, 377, 378, 378의 1 ~ 3, 379, 379의 1, 380, 381, 382의 3, 383의 2, 386의 3, 387, 387의 3, 388, 389, 405, 406, 406의 4, 406의 6, ~ 8, 407, 407의 2, 409, 410, 411, 411의 2, 412의 2, 413, 413의 1, 414, 414의 2 ~ 4, 415, 416의 1 ~ 2, 416의 13, 420, 421, 421의 10, 481의 9 ~ 10, 482, 482의 2, 483, 484, 486, 486의 7, 487의 13 884의 2
	8	1	401 삼성아파트 107동, 108동
		2	401 삼성아파트 109동, 110동
		3	401 삼성아파트 111동, 112동
		4	95의 2, 95의 4, 95의 11, 95의 16 ~ 17, 96의 8, 99의 4, 100의 2 ~ 3, 100의 8, 100의 12 ~ 13, 100의 15 ~ 17, 100의 22, 344의 8 ~ 10, 344의 16, 344의 19, 481의 7, 486의 1, 486의 10, 487의 5, 487의 10, 487의 12, 487의 15 ~ 16, 489의 3, 489의 12 ~ 14, 1493의 14, 1493의 17 ~ 18, 1493의 27
	9	1	345 롯데아파트 101동
		2	345 롯데아파트 102동
		3	345 롯데아파트 103동
		4	345 롯데아파트 상가, 316의 2, 316의 12, 316의 23 ~ 24, 334, 336 ~ 339, 340의 8 ~ 18
	10	1	345 롯데아파트 105동
		2	345 롯데아파트 106동
		3	345 롯데아파트 107동
		4	345 롯데아파트 108동
11	1	345 롯데아파트 109동	
	2	345 롯데아파트 110동	
	3	345 롯데아파트 111동	
	4	320의 3, 334, 334의 2 ~ 3, 345, 336의 3, 337의 3 ~ 4, 338, 338의 5, 339의 5, 339의 11, 339의 13, 340의 8 ~ 11, 340의 13 ~ 15, 340의 17 ~ 18, 345, 1498의 3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12	1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2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7동
		3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8동
		4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9동
		5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상가, 일반번지 92의 5, 93의 4, 95의 1, 95의 8, 95의 12, 95의 15, 96의 1 ~ 2, 96의 10 ~ 12, 96의 13 ~ 12,2, 96의 24~ 25, 97, 97의 4 ~ 5, 98의 2, 98의 4 ~ 6, 99의 2, 100의 7, 100의 9, 100의 14, 100의 25, 101의 1 ~ 2, 101의 4, 101의 6, 101의 8 ~ 9, 101의 10, 101의 12, 101의 18 ~ 20, 101의 23 ~ 24, 102의 2 ~ 3, 104의 2 ~ 3, 106의 1, 106의 3, 106의 10, 107의 2, 107의 19
	13	1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2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3동
		3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5동
		4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6동
		5	107의 8, 107의 12, 109의 10, 313의 1, 316의 3 ~ 4, 316의 17 ~ 22, 342의 7~ 9, 342의 23 ~ 26
	14	1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1 ~ 4호
		2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5 ~ 10호
		3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2동 1 ~ 4호
		4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2동 5 ~ 10호
		5	109의 22, 109의 24, 114의 20, 114의 34, 114의 36 ~ 40, 114의 43, 114의 45, 114의 47, 133의 6, 133의 8 ~ 9, 135의 1, 136의 1, 136의 6, 137의 1, 137의 4, 139의 1, 145의 1, 145의 6, 145의 24, 342의 27, 342의 29, 산191의 6, 산192, 산193의 1, 산193의 3
	15	1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3동
		2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4동
		3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5동
		4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상가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나운동 (나운2동)	16	1	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202동
		2	92 금호타운아파트 203동, 204동
		3	92 금호타운아파트 205동, 206동
		4	92 금호타운아파트 상가, 83, 84, 85, 86-2 ~ 5, 90, 90-1, 91, 91-2 ~ 5, 92, 501-1, 503-1, 502, 121-1, 122, 123-3, 4, 501의 1 501의 9
	17	1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1동 1 ~ 10층, 상가
		2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1동 11 ~ 20층
		3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2동 1 ~ 2호
		4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2동 3 ~ 4호
	18	1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3동 1 ~ 4호
		2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3동 5 ~ 6호
		3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4동 1 ~ 2호
		4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4동 3 ~ 4호
		5	501의 2, 501의 4 ~ 5, 501의 10 ~ 11, 501의 13, 501의 15, 516, 516의 4 ~ 7, 516의 9, 517, 520, 520의 2~ 5, 520의 7, 520의 9 ~ 12, 521, 521의 4, 522의 1~ 4, 522의 12 ~13, 522의 15, 522의 19 ~ 20, 522의 22 ~ 25, 522의 27~ 28, 522의 30 ~ 31, 526의 4 ~ 5, 527의 39 ~ 43, 527의 47, 530, 530의 1 ~ 3, 531의 2 ~ 6, 531의 9 ~ 10, 532의 3 ~ 7, 533의 9, 534의 1~ 3, 534의 6, 1491의 4 ~ 5, 1491의 7 ~ 8, 1491의 10
	19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1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1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1동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2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20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2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2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7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7동 9 ~ 15층
		5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상가, 45의 4, 45의 8 ~ 10,
	21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3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3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4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4동 9 ~ 15층
	22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5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5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6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6동 1 ~ 15층
	23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8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8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9동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0동 1 ~ 8층
		5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0동 9 ~ 15층
	24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1 ~ 5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6 ~ 10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11 ~ 15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상가 38의 1, 38의 3 ~ 4, 38의 8, 39의 2 ~ 3, 39의 9, 48의 1, 49의 2, 49의 5 ~ 8, 50의 3 ~ 7, 50의 20, 51의 1 ~ 3, 51의 5 ~ 7, 51의 9, 51의 12 ~ 13, 51의 16 ~ 19, 51의 22~ 23, 51의 26 ~ 27, 51의 29 ~ 30, 51의 32 ~ 34, 52의 1, 52의 5, 52의 8, 53의 1 ~ 2, 53의 4, 53의 6, 53의 8, 53의 10, 53의 15 ~ 16, 53의 18, 53의 20, 54, 54의 3 ~ 4, 783의 5 ~ 6, 852, 1491의 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25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1 ~ 4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5 ~ 8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9 ~ 12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13 ~ 15층
	26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1 ~ 4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5 ~ 8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9 ~ 12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13 ~ 15층
	27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4동 1 ~ 8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4동 9 ~ 15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5동 1 ~ 8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5동 9 ~ 15층
	28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1 ~ 4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5 ~ 8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9 ~ 12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13 ~ 15층
	29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1 ~ 4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5 ~ 8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9 ~ 12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13 ~ 15층
30	1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1 ~ 4층	
	2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5 ~ 8층	
	3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9 ~ 12층	
	4	47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13 ~ 15층	
	5	59~66, 69~78, 80, 82의 3, 87~90, 90의 2, 501의 1~20, 502~506, 516, 520~522, 527의 43, 527의 47, 530~53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31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1동 1호~6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8동 1호~6호
		3	1527, 1527의 1~14, 1528, 1528의 1~5, 1529, 1529의 1, 1530, 1530의 1~13, 1531, 1531의 1~9, 1532, 1532의 1~11, 1540, 126, 126의 1~16, 128, 128의 1~23, 127, 127의 1, 114, 114의 1, 114의 2, 114의 32, 130, 130의 1, 131, 131의 1~8, 산189, 산189의 1
	32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2동 1호~6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3동 1호~6호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4동 1호~3호
	33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5동 1호~3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6동 1호~6호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7동 1호~6호
	34	1	1526 수송코아루 101동 1호~4호
		2	1526 수송코아루 102동 1호~4호
		3	1526 수송코아루 103동 1호~4호
	35	1	1526 수송코아루 104동 1호~4호
		2	1526 수송코아루 105동 1호~4호
		3	1533, 1533의 1~11, 1534, 1534의 1~11 1535, 1535의 1~11, 1536, 1536의 1~5 1537, 1537의 1~11, 1538, 1538의 1~11
동계	35	144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원동)	1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1동1호~4호, 상가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2동 1호 ~4호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5호~6호
	2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3동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5동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5호~6호
	3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층~4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5층~8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9층~12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3층~15층
	4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1층~8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9층~15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9층~15층
	5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1층~7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8층~14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9층~15층
	6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1층~5층, 상가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6층~10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1층~6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7층~13층
	7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7호~12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3동)	8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1호~4호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7호~12호
	9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1호~4호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5호~8호
	10	1	155의 7 우성아파트 101동
		2	155의 7 우성아파트 102동
		3	155의 7 우성아파트 103동
		4	155의 7 우성아파트 105동, 상가
	11	1	155의 6 롯데아파트 301동, 상가
		2	155의 6 롯데아파트 302동
		3	155의 6 롯데아파트 303동
		4	155의 6 롯데아파트 305동
	12	1	155의 5 대우아파트 101동
		2	155의 5 대우아파트 102동
		3	155의 5 대우아파트 103동
		4	155의 5 대우아파트 104동, 상가
13	1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1호~4호, 상가	
	4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5호~8호	
14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1동, 상가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2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3동	
	4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4동, 153(153의 11 제외), 301(수자원공사)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3동)	15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5동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6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7동
	16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층~5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6층~10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1층~14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1층~7층, 상가
	17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8층~13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층~5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6층~10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1층~15층
	18	1	1188의 10 남전주택 가동, 나동, 다동, 1188~1189
		2	1188의 10 남전주택 라동, 마동
		3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가동, 나동, 상가
		4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다동, 라동, 마동
	19	1	1188-5 동산은파아파트 가,나동, 상가
		2	1187-2 금호2차아파트 가동, 상가, 1187-9, 1187-16
		3	1187-2 금호2차아파트 나,다동
		4	845, 846
	20	1	1187의 7 삼성아파트, 1192 ~1196, 1202~1207, 1257,
		2	161 ~ 185
3		132, 133, 186, 331의 1, 산215, 산216	
4		10,187~330, 138의 2, 333	
21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6호~9호, 상가, 156의 1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2동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1호~5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3동)	22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6호~9호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4동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1호~5호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6호~9호
	23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1호~5호, 상가2동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1호~5호, 상가1동, 156의 4~5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6호~10호
	24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1층~7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1층~15층
	25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8층~15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1층~15층
	26	1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1호~6호, 상가
		2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7호~12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3호~6호
	27	1	866의 1 유원아파트 3동 1호~6호
		2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1호~4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5호~6호, 5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5동 3호~6호
	28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5호~10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5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6동 1호~4호
29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2동 1호~6호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3동 1호~4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5호~8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3동)	30	1	1250~1297, 1321~1399, 1255의 11 그린은파파크맨션 201호~1002호
		2	854의 1 군신월드아파트, 847~854, 1126의 16~17, 1128의 3, 1198~1302, 1304~1307, 1309~1310, 1312, 1315~1316, 산107의 10, 산107의 15, 산170의 1, 산170의 3~4, 산172~산172의 2, 산173의 1~3, 산174의 1~2
		3	855~865
		4	867~871, 1120~1186(1126의 16~17, 1128의 3제외), 1190, 1234
		5	1242의 9 신광모자원A,B,C동, 1235~1249(1248제외), 산107 (산107의 10, 산107의 15제외)
미룡동	31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1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3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1호~4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5호~6호
	32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5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6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7동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8동
	33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2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1호~2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3호~6호
	34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1동, 상가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2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3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4동
	35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5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6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7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8동
36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9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0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1호~4호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5호~6호	

동명	동	반	관 할 지 번
미룡동	37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1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층~10층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1층~20층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3동
	38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4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5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1호~4호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5호~6호
	39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7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8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9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1동
	40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0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2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3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4동
	41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5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6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7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8동
	42	1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1동
		2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2동
		3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3동
		4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4동
		5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5동
	43	1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1동, 102동
		2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3동, 104동
		3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5동
		4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6동
	44	1	1~52(49 제외), 58~186(59, 71 제외)
		2	187~330
		3	878~895
	45	1	49, 53~57, 59, 산204의 3, 산213, 347~412
2		413~426, 산155의 1, 산163의 3	
3		427~473, 704~709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룡동	46	1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4층
		2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5층~8층
		3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9층~12층
		4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3층~15층
	47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층, 상가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2층~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5층~7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9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0층~12층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13층~1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15층~16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17층~18층
		5	842~865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2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5층~8층
		3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9층~12층
		4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3층~15층
	50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6층~18층
		2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층~6층
		3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2층
4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3층~18층	
51	1	474~670, 산62, 산68	
	2	671~703, 710~834(842~865제외, 878~895제외)	
신관동	52	1	376~474의4
		2	474의6~568
		3	570~659의1
	53	1	42의6~172
2		42의118, 166, 176~281의3	
개사동	54	1	20의1~118의2, 356~357, 432~433, 438의1, 산44, 신관동867
		2	118의3~269의1
		3	283의1~472

동명	동	반	관 할 지 번
미룡동	55	1	71 금광베네스타 101동 1호~6호, 상가
		2	71 금광베네스타 105동 1호~6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4호~7호
	56	1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1호~3호
		2	71 금광베네스타 103동 1호~7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4동 1호~6호
	57	1	71 금광베네스타 106동 1호~6호
		2	71 금광베네스타 107동 1호~4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8동 1호~6호
동계	57	219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	1	(생 략)	수송동	1	1	(현행과 같음)
		2	수송택지 2-1, 31~35, 11~18, 90~91 블록			2	798 ~ 800, 802 ~ 810
		3	수송택지 19~21, 36~43, 54~56, 58, 100~104 블록			3	814 ~ 825
		4	송택지 <201-1, 201-2>, 211~219, 241, 242, 251~266 블록			4	<29통,30통으로> 827 ~828, 831 ~832, 834 ~844, 846 ~850
		5	수송택지 202-1 블록			5	830의 1
		6	수송택지 220~222,231~238, 243~244,267~288,293~294 블록			6	852 ~ 876, 879, 882 ~ 884
		7	수송택지 204-1, 204-2 블록				<31통 ~34통으로>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5	1	(생 략)	5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송택지 2-1, 4-2, 82-89, 52~55, 57, 92~99 블록	3	784, 786 ~ 787, 789 ~ 795, 798		
		4	수송택지 3-1, 3-2 블록		<35통 ~38통으로>		
	6~10	(생 략)	6~10	(현행과 같음)			
	11	1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1동 1~8호	11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1동 1~8호	
2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2동 1~8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1~8호			
3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2동 9~16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9~16호			
4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1~4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4호			
12	1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5~8호	12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5~8호		
	2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9~12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9~12호			
	3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13~16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3~16호			
	4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4동 1~3호, 상가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3호, 상가			
13	1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4동 4~6호	13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4~6호		
	2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4동 7~9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7~9호			
	3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4동 10~12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0~12호			
	4	33의 1 제일임대아파트 104동 10~12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0~12호			
14~16	(생 략)	14~16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1동 1~10호, 상가	미장동	17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1동, 상가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2동 1~4호 103동 1~6호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2동
		3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4동 1~8호			3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3동
		4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5동 1~6호			18	1
	18~24	(생 략)	19~25	(현행과 같음)			
지곡동	25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1동,102동 전체,상가	지곡동	26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1동, 상가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3동,104동 전체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5동,106동 전체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3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7동,108동,109동 전체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4동
	26	(생 략)	27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5동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6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7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8동			
			5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9동			
			2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	4	수송택지 201-1, 201-2 블록	수송동	29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1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2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3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4동, 상가
						5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5동
	30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6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7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8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9동				
	1	7	수송택지 204-1, 204-2 블록		31	1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1동, 상가
						2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2동
						3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3동
						4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4동
					32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1동, 상가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2동
3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3동			
4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4동			
33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5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6동					
34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7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8동					
5	4	수송택지 3-1, 3-2 블록	35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1동, 상가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2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3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4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5동		
				36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6동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7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8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9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10동				
	37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1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2동, 상가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3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4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5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6동			
	38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7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8동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9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0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1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2동					
동계	26	109		동계	38	156	

# 신·구조문 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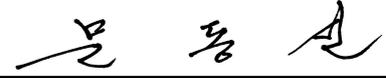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나운동 (나운동)	1~29		(생략)	나운동 (나운동)	1~29		(현행과 같음)		
	30	1~4	(생략)		30	1~4	(현행과 같음)		
		5	54의 2, 59~66, 69~78, 80, 82의 1, 82의 2, 82의 3, 86의 1, 87~90, 90의 2, 90의 4, 501의 1~20, 502~506, 510, 516, 520~522, 527의 43, 527의 47, 530~531, 1491의 4~6,			5		59~66, 69~78, 80, 82의 3, 87~90, 90의 2, 501의 1~20, 502~506, 516, 520~522, 527의 43, 527의 47, 530~531	
			<신설>		31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1동 1호~6호	
			<신설>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8동 1호~6호	
			<신설>			3		1527, 1527의 1~14, 1528, 1528의 1~5, 1529, 1529의 1, 1530, 1530의 1~13, 1531, 1531의 1~9, 1532, 1532의 1~11, 1540, 126, 126의 1~16, 128, 128의 1~23, 127, 127의 1, 114, 114의 1, 114의 2, 114의 32, 130, 130의 1, 131, 131의 1~8, 산189, 산189의 1	
			<신설>		32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2동 1호~6호	
			<신설>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3동 1호~6호	
			<신설>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4동 1호~3호	
			<신설>		33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5동 1호~3호	
			<신설>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6동 1호~6호	
			<신설>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7동 1호~6호	
			<신설>		34	1		1526 수송코아루 101동 1호~4호	
			<신설>			2		1526 수송코아루 102동 1호~4호	
			<신설>			3		1526 수송코아루 103동 1호~4호	
			<신설>		35	1		1526 수송코아루 104동 1호~4호	
			<신설>			2		1526 수송코아루 105동 1호~4호	
			<신설>			3		1533, 1533의 1~11, 1534, 1534의 1~11, 1535, 1535의 1~11, 1536, 1536의 1~5, 1537, 1537의 1~11, 1538, 1538의 1~11	
	동계	30	129			동계	35	144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동)	1~30		(생 략)	나운동 (나운동)	1~30		(현행과 같음)
미룡동	31~43		(생 략)	미룡동	31~43		(현행과 같음)
미룡동	44	1	1~52(49 제외), 58~186(59 제외)	미룡동	44	1	1~52(49 제외), 58~186(59, 71 제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미룡동	45~51		(생 략)	미룡동	45~51		(현행과 같음)
신관동	52~53		(생 략)	신관동	52~53		(현행과 같음)
개사동	54		(생 략)	개사동	54		(현행과 같음)
미룡동			<신설>	미룡동	55	1	71 금광베네스타 101동 1호~6호, 상가
			<신설>			2	71 금광베네스타 105동 1호~6호
			<신설>			3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4호~7호
				<신설>	56	1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1호~3호
				<신설>		2	71 금광베네스타 103동 1호~7호
				<신설>		3	71 금광베네스타 104동 1호~6호
				<신설>	57	1	71 금광베네스타 106동 1호~6호
				<신설>		2	71 금광베네스타 107동 1호~4호
				<신설>		3	71 금광베네스타 108동 1호~6호
동계	54	210		동계	57	219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1호

###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주민투표조례”를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b>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장 (인)                 </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서식 】

<b>이 의 신 청 서</b>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략) ④ (신설)</p>	<p>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b>20세</b>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b>19세</b> ----- ----- ----- -----</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u>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시장은 <u>주민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 ----- ----- ----- ③~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2호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 ”을 “법 제2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	제2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법 제2조제3항제2호</u> -----
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u>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u>
				<u>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u>
				<u>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u>
				<u>있다.</u>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	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u>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u>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u>	<u>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u>
98.12.30>			<u>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u>	<u>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u>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u>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u>	<u>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u>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 명령	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u>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	② <u>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u>
				<u>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u>
				<u>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	제11조의2 (삭제)		
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98.12.30>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생략)</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lt;신설 98.12.30&gt;</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복직되며</u>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lt;신설 98.12.30&gt;</p>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u>----- ----- ----- -----</p> <p>③ ----- -----<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병역 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별정직 공무원이 제 11조제 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 3조제 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u>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u></p>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3호

##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 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산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

제7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전 가족이 군산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8조 (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통 선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4호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3배”를 “4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 1. 제조업
-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9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신청서 및”을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2억원이하로”를 “3억원 이하로”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제목 괄호 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b></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 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및설치에관한조례</b></p> <p>제1조(목적) ----- -----<del>제142조</del>----- ----- ----- ----- ----- -----.</p>
<p>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li> <li>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li> <li>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li> <li>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li> </ol>
<p>제5조(기금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생략)</li> <li>③ (생략)</li> <li>④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li> </ol>	<p>제5조(기금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현행과 같음)</li> <li>④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del>4배</del>----- ----- -----.</li> </ol>

현행	개정안
<p>제7조(융자 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산시내에 공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망 중소기업체</li> <li>2. 수출 업체</li> <li>3. 산업단지 입주 업체</li> <li>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li> <li>5.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li> <li>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li> <li>7.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li> <li>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li> </ol>	<p>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업</li> <li>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li> <li>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li> </ol>
<p>제9조(융자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1. (생략)</li> <li>2. (생략)</li> <li>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li> </ol>	<p>제9조(융자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 -----.</li> </ol>
<p>제12조(융자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2억원이하로 한다.</li> </ol>	<p>제12조(융자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 ----- 3억원 이하로-----.</li> </ol>
<p>제13조(융자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생략)</li> <li>③ &lt;신설&gt;</li> </ol>	<p>제13조(융자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li> </ol>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별 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연번	업 종 명	연번	업 종 명
1	도로화물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	-----
2	해상운송업	--	-----
3	화물취급업	--	-----
4	보관 및 창고업	--	-----
5	화물 자동차 터미널 시설 운영업	--	-----
6	화물운송대행업	--	-----
7	화물 중개 및 대리업	--	-----
8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임대업	--	-----
9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
10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이용 관련업	--	-----
11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2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	-----
13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4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5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	-----
16	산업설비 청소업	--	-----
17	패션디자인업	--	-----
18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	-----
19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	-----
20	폐수처리업	--	-----
21	영화제작업(배급업 제외)	--	-----
22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5호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 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군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육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향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작목반, 생산자단체 및 연구모임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가공·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연구모임 및 가공·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연구모임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

제1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향만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장, 농협군산시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대학교수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10.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다

②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

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요구 등)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친환경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2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열의도
3. 녹비작물 가꾸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

## 5.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③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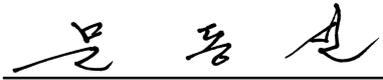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6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군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가요제, 제(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2. 벚꽃예술제
3. 군산수산물축제
4. 진포예술제
5. 군산새만금해맞이행사

6. 군산세계철새축제

7. 기타 군산시에서 1,000만원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명 및 국장급 관계공무원 2명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3명이상
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은 1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소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단체 또는 축제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조사용역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자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67호

###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6항”을 “영 제1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0조”를 “영 제13조”로,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제1항1호”를 “법 제11조제4항”으로, “영 제19조제2항”을 “영 제2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23조제3항”을 “영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52조제2항”을 “영 제62조제2항”으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으로, “군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을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법 제61조”를 “법 제62조”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법 제68조제3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같은항 제5호 중 “법 제83조”를 “법 제85조”으로, 같은항 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에”를 “군산시에”로, 같은항 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같은 항제8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각 항 외의 본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전의 제13조 본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같은 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3호(중전의 제1항제3호)의 후단 괄호 안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항제6호(중전의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나목(중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2호(중전의 제2항제2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제4항(중전의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중전의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도시계획법제3조제10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같은 항제2호나목(중전의 제3항제2호나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와”를 “시장과”로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지방재정법 제65조”을 “「지방재정법」 제7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공영사업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 ----- (이하 “영”이라 한다)----- -----	
제2조(정 의) ① (생략)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2조(정 의) ① (현행과 같음)	1. “도시개발구역” ----- ----- ----- 2. “도시개발사업” -----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현행	개정안
<p>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 70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1월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del>영 제13조</del>-----  <del>영 제13조제2항</del>-----  -----  -----  -----  -----  -----  ②군산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  -----  -----</p>
<p>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 110 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p>	<p>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 110 제4항 -----영 제22조의 -----  <del>시장</del> -----  -----  -----</p>
<p>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 2호라목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p>	<p>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 2호라목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p>
<p>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 5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60조제1항-----  -----  <del>(이하“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del>-----  -----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①(생략) 1.~2.(생략) 3. <u>법 제61조</u>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u>법 제68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u>법 제83조</u>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6. <u>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u> 제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u>지방자치단체</u>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7. <u>지방세법</u>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u>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u>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제65 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p> <p>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u>법 제60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①(생략) 1.~2.(생략)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제30조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4.~5.(생략) 6. <u>지방자치단체장</u>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비 ②(생략) 1.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생략) 나.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2. (생략)</p>	<p>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62조</u>의 ----- ----- 4. <u>법 제70조제3항</u>의 ----- 5. <u>법 제85조</u>의 ----- ----- 6. 「<u>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u>」 ----- -----<u>군산시</u>에----- ----- 7. 「<u>지방세법</u>」 제238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u>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u>주차장법</u>」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p> <p>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 <u>법 제61조제3항</u> ----- -----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4.~5.(현행과 같음) 6. <u>시장</u>이----- ----- ②(현행과 같음) 1. <u>시장</u> ----- ----- 가.(현행과 같음) 나.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2.(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del>7</del>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 장, 시의회 의원 2인 ,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 2인 이내의 회계전문가로 한다.</p>	<p>②----- -----</p> <p>③ ----- -----공영사업과 장----- -----</p>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군산시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5퍼센트 범위내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내
3. 목욕용에 대해서는 최고 30퍼센트 범위내
4. 공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 한다.

④ 시장은 매월 기준일자를 정해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개선 명령 후 6개월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 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회수 한다.

⑦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량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제8조(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빗물의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용도를 달리하는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하고 “빗물사용”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 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 계획서(제5조제1항관련)					
1. 건축장소					
2. 건축물 계 획	건축물명칭		부지면적	m <sup>2</sup>	
	건축물용도		건축면적	m <sup>2</sup>	
	층 수		연 면 적	m <sup>2</sup>	
	구 조		공사종별	신축·증축·용도변경	
3. 공사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빗물이용 시설계획	용 량	톤	5. 빗물 이용 계획	이 용 량	톤/년
	사 업 비	백만원		이용횟수	회/년
	집수방법			활용용도	
	집수면적	m <sup>2</sup>		기 타	
<p>「군산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건축주 주소</p> <p>성 명 (인)</p> <p>(전화)</p> <p>군 산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사업개요서(제5조제1항관련)

1. 설 치 위 치			
2. 사 업 비	백만원	3. 산출근거	
4. 용 량			
5. 사 업 기 간			
6. 기 타	빗물이용시설 관련 개략 설계도 첨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업 개요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성 명 (인)

(전화)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5조제2항관련)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	
시설 설치내역	시 설 위 치		
	시 설 용 량	톤	
	사 용 용 도		
	설 치 비 용	원	
	착 공 일 자		완료일자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수도수전 현 황	수용가번호			
	구 경	mm	업 종	
빗물사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년월일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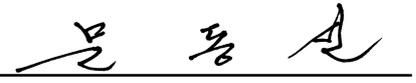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0호

###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1,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지방세법의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1호

###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수탁 할 수 있으나 재차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4조의2(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가 상호 협의 하에 4년 이내로 한다.</u></p> <p><u>②시장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위·수탁할 수 있으나 재차 수탁자의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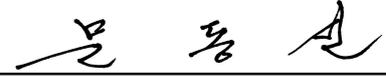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한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p>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3호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월명공원 테니스장 등”을 “월명공원 테니스장·수송공원 축구장·생말공원 축구장·금강공원 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 시설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조 제16호 중 “제29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조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조의 조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으로 하고, 본문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같은조 제①항 제2호부터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3. 불우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어린이·경로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경행사

같은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제13조의 조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①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료를 납부한자가 이용일 이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100을 공제하여 반환하고, 이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 야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야 구 장	체육경기	50,000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5할 가산)</li> <li>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li> </ul>
	체육이외	105,000	60,000	

별표1 중 월명체육관란 다음에 족구장, 수송공원 축구장, 생말공원 축구장, 금강공원 축구장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사용목적	전용사용료(원)		비 고
		휴 일 (토요일 포함)	평 일	
족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무 료	무 료	
수송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li> <li>·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li> </ul>
	체육이외	50,000	30,000	
생말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li> <li>·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li> </ul>
	체육이외	50,000	30,000	
금강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li> <li>·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li> </ul>
	체육이외	50,000	30,000	

별표3의 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종 별	기 준	금 액
조 명	1일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 구 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li> <li>○ 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li> <li>(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1면)</li> <li>○ 주경기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li> <li>○ 체 육 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li> </ul>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월명체육관·월명실내수영장·월명공원테니스장 등 각종 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 15. (생 략)</p> <p>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p> <p>제10조(사용료)①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 6”과 같이 한다.</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①&lt; 신 설&gt;</p> <p>1. (생 략)</p> <p>2. <u>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u></p> <p>3. <u>불우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경노자·군경행사</u></p> <p>4. ~ 8. (생 략)</p>	<p>제2조(정의)----- -----.</p> <p>1.----- ----- ----- -----<u>월명공원테니스장·수송공원 축구장·생말공원 축구장·금강공원 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u> ----- -----.</p> <p>2. ~ 15. (현행과 같음)</p> <p>16. -----제2조 제1항----- -----.</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u>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u>-----.</p> <p>①<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현행과 같음)</p> <p>2. <u>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u></p> <p>3. <u>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어린이·경로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경행사</u></p> <p>4. ~ 8. (현행과 같음)</p>



【별표 1】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주 경기장	우레탄 트랙	체육경기 75,000 체육이의 105,000	50,000 7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1/2가산	-----	-----	-----	-----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75,000 체육이의 105,000	50,000 70,000	·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1/2가산	-----	-----	-----	-----
야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의	<u>40,000</u> <u>100,000</u>	<u>30,000</u> <u>50,000</u>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5할가산)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u>50,000</u> <u>105,000</u>	<u>40,000</u> <u>60,000</u>	----- -----
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체육이의	15,000 17,000	10,000 12,000	8시간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월명체육관	체육경기 - 주간(1회) - 야간(1회)	60,000 90,000	40,000 6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	----- ----- -----
	체육이의 - 주간(1회) - 야간(1회)	300,000 450,000	200,000 30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 1/2가산	----- ----- -----	----- ----- -----	----- ----- -----	----- ----- -----
족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무 료	무 료	
수송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
- -----
- -----
- -----

【별표 3】

○ 부대 시설 사용료

구분		현행		개정안	
종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전기	1시간당	관허요금		-----	-----
음향시설	1일 1회	월명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
전광판	1일 1회	2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조명	1일 1회	○야구장: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테니스장(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 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시간당관허요금 사용시간 20일 미만 <u>〈신설〉</u> ○체육관: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권투링	1일 1회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후로링카바	1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	-----
배구 매트	1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냉난방	1일	전기료 및 유류대 (냉방은 전기료)		-----	-----
수도료	1회	수도사용 및 설비		-----	-----
무대사용료	1회	30,000원		-----	-----
집기사용료	1회	연설대 1개당: 1,000원 탁자 1개당: 500원 의자 1개당: 철재 100원 목재 200원		-----	-----

(현행)

(개정안)

-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 기본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 (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회에 걸쳐 매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 -----
- -----
- -----
- -----
- -----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인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4호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관이라 함은 취미교실, 강의실, 창작실, 음악감상실, 상담실, 청소년극장, 체육관, 예절관, 디스코텍, 숙소, 식당(매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련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대회, 감상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 예술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 허가)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수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청소년 극장, 체육관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라 함은 08:00~17: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영화 또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이하 할부제사용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사용료는 허가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초과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 시의 행사는 전액 감면

2.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는 50퍼센트 감면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감면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

제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판매 등) ①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시장이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제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시설위탁관리, 임대차계약)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타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시설물의 차임 납부방법

2.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담보와 보증 및 해제

4. 손해배상의 예약

##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증금은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가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⑤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전항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수탁 또는 임차기간중 시장이 필요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시설보증금 예치) 시장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차임) 시설 임대에 따른 차임의 결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성과 수입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차임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 부담) 사용료는 당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비용 부담)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시설 감사) ①시장은 시설운영 상황을 수시 또는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관리) ①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임차인은 시설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재산을 군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년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때
2. 임대차 조건에 위반한 때
3. 차임을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전대 또는 처분한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시설사고의 방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 운영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전책임을 진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5조제1항관련)

##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 · 일 · 공휴일		
		행 사	영 화	공 연	행 사	영 화	공 연
청소년극장	오전(08:00~12:00)	30,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오후(13:00~17:00)	45,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90,000	50,000	60,000	45,000	60,000	70,000
체육관	체육경기	오전(08:00~12:00)	30,000		4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야간(18:00~22:00)	45,000		60,000		
	각종행사	오전(08:00~12:00)	90,000		120,000		
		오후(13:00~17:00)	90,000		120,000		
		야간(18:00~22:00)	135,000		180,000		
강의실	각 실당 1일	10,000		15,000			
취미교실	1일	10,000		15,000			
음악감상실	1일	10,000		15,000			
창작실	1일	10,000		15,000			
예절관	1일	10,000		15,000			
디스코텍	1일	10,000		15,000			
숙소	1인당(1박)	· 청소년 : 2,000		· 일반 : 3,000			

##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20,000	
영 사 기		1회	30,000	
조 명	체 육 관	1시간	30,000	
	청소년극장	1시간	15,000	
	기 타 시 설	1일	5,000	각 실당
음 향	마 이 크	1개	2,000	
	무선마이크	1개	5,000	
	녹 음 기	1회	3,000	
	녹 음 료	1회	4,000	

##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관	1회	100,000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청소년극장	1회	30,000	오전·오후·야간은 각1회로 본다.
기 타 시 설	1일(실당)	10,000	1일

##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녹화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중계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라디오 중계료	1회	2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아취 설치료	1건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현관, 현수막설치	1건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행사명 :

3. 사용기간 : 20 . . . ~ . . . ( 일간)

4. 사용시설 : ( 변) ①청소년극장 ②체육관 ③강의실 ④취미교실  
⑤음악감상실 ⑥창작실 ⑦예절관 ⑧디스코텍 ⑨숙소

5. 부속설비

품명	수량	품명	수량

※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

6. 관람료 : 원

7. 참가인원 : 명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단체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2. 20 . . . 귀 청소년수련관( )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단체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수련관 사용 허가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 기간 : 2 0 . . . ~ 2 0 . . . ( 일간)

5. 사용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가조건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 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의 임대차 운영을 함에 있어 임대인 군산시장을 “갑” 이라 칭하고 수탁인 시 (읍·면·동) 번지 ○○○를 “을” 로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함

계약금액	원정
	₩

제1조 “을” 은 “갑” 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을 임차 경영함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월 사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 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설장내 청결유지
- 2. 부당요금 징수 금지
- 3. 주류판매 금지

제4조 “을” 은 “갑” 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 업무의 지정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5조 “을” 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을” 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을” 은 본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해약 예정일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갑” 은 “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1. “을” 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을” 이 갑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위신을 매우 손상시켰을 때
- 3.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5일이상 휴업한 때
- 4. “을” 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 5. “갑” 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①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10일안에 계약 당시의 대여물을 “갑” 에게 돌려주고 퇴거한다.

② “을” 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1일에 20,000원씩을 갑 에게 배상한다.

제10조 ① “을” 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갑” 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을 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③배상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을” 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을” 은 15일이내에 동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갑” 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로 한다.

제12조 “을” 은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을” 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서는 “갑” 의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30,000원 이상 재산 소유자인 “을” 의 연대 책임 보증인 2명의 연서로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을)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보증인 인감 증명 각1통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5호

###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군산시립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과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 인쇄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2장 도서관 운영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립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 798-1번지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14번지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수수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2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암작은도서관 : 군산시 구암동 397-8번지
2. 미성작은도서관 : 군산시 산북동 3801-1번지
3. 월명작은도서관 : 군산시 월명동 18-15번지
4. 미룡작은도서관 : 군산시 미룡동 900-1번지
5. 흥남작은도서관 : 군산시 장재동 212번지

제26조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8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9조 (자문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운영 준용) 제5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사 용 료 (제13조 관련)

## 1.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대회의실	1회	30,000	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과)
교양문화실	1회	20,000	

## 2. 기타설비 사용료

설비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음향	음향설비	1회	10,000	·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시 1대당 2,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대	5,000	
조명	대회의실	1회	25,000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대회의실	1회	10,000	
	교양문화실			
냉·난방	대회의실	1회	20,000	·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교양문화실		10,000	

[별표 2]

**수 수 료** (제13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4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군산시의회 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 876호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p> <p>제8조(입장료 면제)</p> <p>① ~ ⑤ 생략</p> <p>⑥ &lt;신 설&gt;</p>	<p>제명 : <u>군산시</u>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p> <p>제8조(입장료 면제)</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시장은 「<u>공직선거법</u>」 제2조 및 「<u>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제8조,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 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 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p>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5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429호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퇴관 및 열람시간) 군산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 관) ①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서관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월요일과 국경일에 휴관한다.
-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 3. 작은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부대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시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다녀야 한다.
- 2.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섭취,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 3. 자료, 비품, 기타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열람실내에서 수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출받은 도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서관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비서류 중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1매
2. 중·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1매
3. 유아·아동 - 보호자동반, 의료보험증, 유아·아동사진1매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직(학) 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사진1매

제6조 (회원증발급 및 사용·책임)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으로서 타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는 자료는 1인 3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한다. 다만,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1회 5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DVD 등 기타 비도서자료
6.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관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관외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한다.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 수 만큼 관외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며 현품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변상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징수한 변상금은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 한다.

③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⑤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정보이용) 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장서 점검)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전체 장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3. 비영리 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등
6. 기타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15조(사용신청 등)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전까지, 허가신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각종행사·공연 등의 홍보물을 게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6조(사용료·수강료 납부)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개시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18조(사용료·수수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부대시설사용자 및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대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부대시설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 전액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 한 경우 : 사용료(수수료) 전액

② 제1항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허가 취소된 부대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 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1호,2호,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

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3호,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반환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료복사카드를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수수료 잔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대장 비치)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부대시설 사용현황(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이용시간(제2조 관련)

구 분		이용 시간			
		월요일	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 립 도서관	아동·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휴 관	09:00 ~ 18: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휴 관	09:00 ~ 12:00 13:00 ~ 18:00	09:00 ~ 12:00 13:00 ~ 17:00	
	열람실	07:00 ~ 22:00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09:00 ~ 21:00			
임피채만식도서관		09:00 ~ 18:00			휴관
작은도서관		09:00 ~ 18:00			휴관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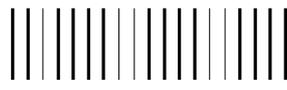
(전 면)

도서관 회원증

사 진

성 명 : 0 0 0

회원번호 : 00000000000000



군산시립도서관

(후 면)

**★ 유의사항 ★**

1. 도서대출시 이 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책수 : 1회 3책 14일
4.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려주세요
5. 반납기일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중지 됩니다.

※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파손시 동일자료로 변상  
 자료운영담당 ☎450-6575, 구암작은도서관 ☎445-1800  
 월명작은도서관☎443-2642, 미성작은도서관☎461-6178  
 미룡작은도서관☎468-2241, 흥남작은도서관☎445-2241  
 홈페이지 : <http://lib.gunsan.go.kr>

군산시립도서관





[별지 제4호서식]

기 증 증 서

제 호

기 증 증 서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우리 도서관에 기증한 등  
점의 자료는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립도서관장(직인)









[별지 제9호서식]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부 대 시설명	신 청 자		사용기간	행사명	행사참가 원인	사 용 료		부 과 사용료	비 고 (허가여부등)	결 재		
	변경신청 일자		단체명	대표자명	변 경 사용기 간	변 경 행사명	변 경 행사참 가원인	감액	반환			담당자	담당	관장

[별지 제10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현황

일자	주체	행사명	사 용 부대명	참 석 인 원	사용료	유 형 별					비 고	
						연 극	영 화	음악회	공공행사	종교집회		기 타



[별지 제12호서식]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강명						
수강료납부일		년 월 일				
환불금액		일금		원정 (₩ 정)		
환불계좌		은행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p>군산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p>						
군산시립도서관장 귀하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09- 42호

2009년도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적도근점(112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일

##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횡선수치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044	271999.25	177500.33	옥산면 쌍봉리 582-3	09.4.11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45	271924.56	177326.19	옥산면 쌍봉리 247-6	“	“
“	51046	271502.98	177192.53	옥산면 옥산리 166-46	“	“
“	51047	271350.02	177308.38	옥산면 옥산리 60-8	“	“
“	51048	271002.53	177723.76	옥산면 남내리 503-4	“	“
“	51049	270839.76	178008.43	옥산면 남내리 548-5	“	“
“	51050	271333.02	178060.00	옥산면 남내리 541-2	“	“
“	51051	271298.39	178257.81	옥산면 남내리 544	“	“
“	51052	270926.81	178312.74	옥산면 남내리 550	“	“
“	51053	269664.70	179763.86	회현면 원우리 539-2	“	“
“	51054	269897.78	179996.79	회현면 원우리 541-2	“	“
“	51055	269308.65	179817.85	회현면 학당리 353-4	“	“
“	51056	269116.72	179735.12	회현면 학당리 22-1	“	“
“	51057	268779.70	179505.42	회현면 학당리 26-14	“	“
“	51058	268461.98	178766.63	회현면 학당리 1247-13	“	“
“	51059	269263.28	179268.38	회현면 학당리 413-3	“	“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060	269015.26	179333.97	회현면 학당리 495-4	09.4.11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61	268766.51	179065.82	회현면 학당리 603	“	“
“	51062	268890.62	178746.34	회현면 학당리 1003-13	“	“
“	51063	268889.21	178625.02	회현면 고사리 426-2	“	“
“	51064	269828.55	178727.79	회현면 고사리 183	“	“
“	51065	269064.35	178223.19	회현면 고사리 503	“	“
“	51066	268972.97	177903.64	회현면 고사리 548-1	“	“
“	51067	268643.47	178285.29	회현면 학당리 1077-4	“	“
“	51068	269082.14	179556.79	회현면 학당리 299-7	“	“
“	51069	268295.54	178923.61	회현면 학당리 1255-2	“	“
“	51070	267836.48	178597.34	회현면 학당리 1252-5	“	“
“	51071	268210.91	178520.40	회현면 학당리 1250-9	“	“
“	51072	268193.67	178337.53	회현면 학당리 1249-3	“	“
“	51073	268270.03	178119.46	회현면 대정리 13-1	“	“
“	51074	267898.42	177501.03	회현면 대정리 760-5	“	“
“	51075	267489.93	177547.12	회현면 금광리 1307-4	“	“
“	51076	265968.97	175166.38	회현면 월연리 695-1	“	“
“	51077	265796.84	175538.45	회현면 월연리 582-1	“	“
“	51078	271387.58	176884.42	옥산면 옥산리 168-24	“	“
“	51079	271070.51	177053.12	옥산면 옥산리 174-6	“	“
“	51080	270778.77	176766.02	옥산면 옥산리 273-3	“	“
“	51081	270349.22	176728.41	옥산면 옥산리 333-1	“	“
“	51082	270246.84	175793.80	옥산면 금성리 307-2	“	“
“	51083	270151.88	175499.36	옥산면 당북리 164-1	“	“
“	51084	271022.76	174748.61	옥산면 당북리 596-2	“	“
“	51085	270542.53	175054.41	옥산면 당북리 1011-1	“	“
“	51086	270228.16	174897.41	옥산면 당북리 638-26	“	“
“	51087	270133.04	174505.61	옥산면 당북리 1019-1	“	“
“	51088	269752.61	173611.44	옥구읍 상평리 356	“	“
“	51089	269299.50	173715.67	옥구읍 상평리 816-3	“	“
“	51090	268999.27	174051.67	옥구읍 이곡리 798-11	“	“
“	51091	268526.38	174080.80	옥구읍 이곡리 449-4	“	“
“	51092	269326.58	172574.78	옥구읍 이곡리 752-5	“	“
“	51093	269647.28	171673.61	옥구읍 선제리 137-11	“	“
“	51094	269261.19	171604.24	옥구읍 선제리 97-1	“	“
“	51095	268870.50	171814.17	옥구읍 선제리 510-5	“	“
“	51096	268775.54	171566.99	옥구읍 선제리 527-3	“	“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097	268678.57	171172.70	옥구읍 선제리 620-2	09.4.11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98	269097.01	171253.98	옥구읍 선제리 509-7	“	“
“	51099	269404.51	170990.50	옥구읍 선제리 688-2	“	“
“	51100	269140.26	170627.19	옥구읍 선제리 803-3	“	“
“	51101	269087.75	170279.05	옥구읍 어은리 246-2	“	“
“	51102	268536.56	170113.21	옥구읍 어은리 313-1	“	“
“	51103	268266.30	170020.05	옥구읍 어은리 416-1	“	“
“	51104	267819.59	170262.77	옥구읍 어은리 1608-6	“	“
“	51105	267508.05	170437.68	옥구읍 어은리 1614-1	“	“
“	51106	266827.93	170437.07	옥구읍 어은리 789-3	“	“
“	51107	266245.48	170691.10	옥구읍 어은리 30	“	“
“	51108	268007.24	169610.35	옥구읍 어은리 1675-1	“	“
“	51109	268860.13	169566.90	옥구읍 어은리 754	“	“
“	51110	269512.34	168215.56	옥서면 옥봉리 1125-2	“	“
“	51111	270146.10	168112.56	옥서면 옥봉리 180-7	“	“
“	51112	270510.33	168473.31	개사동 1173-2	“	“
“	51113	270396.35	167882.28	개사동 1109	“	“
“	51114	270694.54	167385.02	개사동 개사동 1015	“	“
“	51115	270632.69	167063.28	옥서면 옥봉리 503-1	“	“
“	51116	269891.19	167051.83	옥서면 옥봉리 2069	“	“
“	51117	269439.94	167303.75	옥서면 옥봉리 1774-5	“	“
“	51118	269234.36	167784.25	옥서면 옥봉리 1805-3	“	“
“	51119	266066.06	166499.78	옥서면 선연리 1863-3	“	“
“	51120	265743.74	166387.10	옥서면 선연리 1358-175	“	“
“	51121	265208.67	166422.39	옥서면 선연리 2157	“	“
“	51122	257845.42	151620.48	옥도면 신시도리 232	“	“
“	51123	257815.65	151272.63	옥도면 신시도리 237	“	“
“	51124	258069.31	150963.15	옥도면 신시도리 234	“	“
“	51125	257964.07	150599.26	옥도면 신시도리 152	“	“
“	51126	257658.15	150461.16	옥도면 신시도리 22-1	“	“
“	51127	257755.27	150276.96	옥도면 신시도리 산47-3	“	“
“	51128	257505.11	150254.40	옥도면 신시도리 120-1	“	“
“	51129	257232.13	150091.35	옥도면 신시도리 산66-1	“	“
“	51130	257752.14	149835.46	옥도면 신시도리 산53	“	“
“	51131	260143.66	153658.36	옥도면 야미도리 148	“	“
“	51132	260434.38	153574.41	옥도면 야미도리 135-1	“	“
“	51133	260371.26	153877.92	옥도면 야미도리 산139-2	“	“



군산시 고시 제2009 - 43호

# 고 시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장대학)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5.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군장대학)사업
  - 나. 명 칭 : 학교(군장대학) 공작물(연결통로)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시설결정면적	사 업 규 모	비 고
116,864㎡	- 시설공사(공작물) 연결통로 1식(철골조) : B=7.4m L=23m	- 기존건축연면적 6개동, 25,897.22㎡(증감없음)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번지
  - 나. 성 명 : 학교법인 광동학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5. 인가일 ~ 2009. 7. 31
6. 사업비 : 57,202 천원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09-914호

# 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도로명 공고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항에 의거 2009년도 군산시 새주소위원회가 심의완료됨에 따라 그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

2009년 5월 8일

## 군 산 시 장

### 1. 심의결과

- 가. 도로명 부여 145건
- 나. 도로명 및 구간변경 84건
- 다. 도로명 폐지 2건

### 2. 공고기간 : 2009. 5. 8 ~ 5.17 (10일간)

### 3. 변경철자

<b>도로명 변경신청</b>	주민의견 수렴공고 ⇒ 10일 이내	심의 상정 ⇒ 30일 이내	<b>새주소위원회 심의</b>	결과 통보 ⇒ 10일 이내	<b>공고 및 결과 통보</b>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법인·단체 대표자, 건축물 소유자, 건물점유자(20세 이상 세대주)의 5분의1 신청 또는 직권			새주소위원회 개최		신청인의 대표자	
<b>서면동의</b>	서면 동의 일은 날로 부터 ⇒ 10일 이내	<b>고 시</b>	서면 동의 일은 날로 부터 ⇒ 30일 이내	<b>도로명시설 설치</b>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 변경 사항 · 변경기준일		·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		

붙 임 : 심의결정 도로명조서 1부. 끝.

## 심의결정 도로명 조서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1	길	변경	버들1길	평유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구읍
2	길	변경	광월산길	한절길	한절마을 통과도로	옥구읍
3	길	변경	옥실길	오곡길	지명 인용	옥구읍
4	로	변경	오리실로	옥구남로	옥구중심에서 남쪽으로 가는 도로	옥구읍
5	로	변경	이곡로	옥구동로	옥구읍 동쪽에 위치 상평,이곡,수산리 통과도로	옥구읍
6	길	부여		개구말1길	옛지명에서 인용	옥구읍
7	길	구간 조정		구성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8	길	변경	대려윗길	대려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9	길	변경	대려아랫길	대려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0	길	변경	여로3길	옥산신성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11	길	변경	버들3길	배그매3길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2	길	변경	외류길	외류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3	길	변경	버들2길	외류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4	길	변경	우동길	우동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5	로	변경	용화로	남내로	마을명칭인용/주민의견수렴안	옥산면
16	길	부여		당북원당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17	길	부여		우동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8	길	부여		신당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회현면
19	길	변경	지새울길	임피1길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 수번호사용	임피면
20	길	변경	안흥길	임피2길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 수번호사용	임피면
21	길	변경	호령길	임피안길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 수번호사용	임피면
22	길	변경	임피성내길	동현길	옛 동현위치로 가는 도로	임피면
23	길	변경	동현길	임피성내길	옛 임피성안으로 가는 도로	임피면
24	길	변경	족세길	안흥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25	길	변경	솔산금암길	신타매길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26	길	부여		성터길	옛 성터로 가는 도로	임피면
27	길	부여		지새울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28	길	부여		범호재길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29	길	부여		안흥안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30	길	부여		계남1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31	길	부여		임피서길	임피면 서쪽 통과 도로	임피면
32	길	부여		독골길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33	길	변경	화월길	월암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서수면
34	로	변경	서수로	서라로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서수면
35	로	부여		함안로	익산 함라와 용안으로 가는 도 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서수면
36	길	변경	삼길길	삼길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37	길	변경	하광길	하광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38	로	변경	신창로	만경로	만경강을 지나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39	길	부여		삼길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40	길	부여		상광안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대야면
41	길	부여		서중길	옛지명에서 인용	대야면
42	길	부여		하광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43	로	부여		금만로	김제 금만평야를 지나는 도로/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44	로	부여		오산로	익산시 오산면에 이르는 도로/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45	길	변경	대방길	개정안길	운회, 아산, 발산, 통사리를 통 과하는 개정면 안에 위치	개정면
46	길	변경	대황길	대황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도로구간 직진성 결여	개정면
47	길	부여		남발산길	마을명칭 인용	개정면
48	길	부여		대방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49	길	부여		대방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0	길	부여		대황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1	길	부여		대황3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2	길	부여		대황4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53	길	부여		옥석길	옥석마을 통과 도로	개정면
54	길	부여		옥석신기길	옥석리 신기마을 통과도로	개정면
55	길	변경	여방길	여방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6	길	변경	기린길	기린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7	길	변경	작촌길	간치말1길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8	길	변경	구작길	간치말3길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9	길	변경	큰뚝길	둔덕대동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성산면
60	길	변경	창천길	식천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1	길	변경	우곡길	우곡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2	길	변경	덜걱다리길	창오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3	길	변경	창오길	창오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4	길	부여		고봉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5	길	부여		고봉4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6	길	부여		고봉5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7	길	부여		여방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8	길	부여		기린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9	길	부여		간치말2길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0	길	부여		간치말안길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1	길	부여		둔덕4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2	길	부여		둔덕5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3	길	부여		성황당길	옛지명에서 인용	성산면
74	길	부여		우곡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5	길	부여		창오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6	길	부여		환동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7	로	부여		군익로	군산과 익산을 잇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성산면
78	길	구간 조정		군둔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나포면
79	길	변경	원장상길	고상골길	옛지명에서 인용/ 도로구간 직진성 결여	나포면
80	길	변경	옥곤문화길	옥곤문화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1	길	변경	등동길	등동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82	길	변경	박머리길	입점고분길	입점 고분군으로 가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나포면
83	길	변경	신방길	박말길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4	길	변경	서왕2길	서왕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나포면
85	길	변경	서왕1길	수레길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6	길	변경	옥동길	옥동1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7	로	변경	망해로	망해산로	망해로의 어감이 좋지 않고 망해산 인용/ 도로명변경신청	나포면
88	길	부여		미루매길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9	길	부여		옥곶문화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90	길	부여		등동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91	길	부여		신방길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92	길	부여		수철길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93	길	부여		옥동2길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94	로	폐지		방령로	방령을 지나는 도로가 아님	나포면
95	길	부여		개야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96	길	부여		개야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97	길	부여		개야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98	길	부여		개야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99	길	부여		개야도4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0	길	부여		개야도5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1	길	부여		개야도6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2	길	부여		개야도7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3	길	부여		개야도8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4	길	부여		관리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5	길	부여		두리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6	길	부여		말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7	길	부여		말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8	길	부여		말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9	길	부여		명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0	길	부여		명사십리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1	길	부여		명사십리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2	길	부여		명사십리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113	길	부여		무녀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4	길	부여		무녀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5	길	부여		무녀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6	길	부여		무녀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7	길	부여		무녀도4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8	길	부여		무녀도동길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19	길	부여		방축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20	길	부여		방축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1	길	부여		방축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2	길	부여		방축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3	길	부여		비안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24	길	부여		비안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5	길	부여		비안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6	길	부여		비안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7	길	부여		선유북길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28	길	부여		선유남길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29	길	부여		선유남1길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0	길	부여		선유남2길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1	길	부여		선유남3길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2	길	부여		신시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33	길	부여		신시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4	길	부여		신시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5	길	부여		신시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6	길	부여		야미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7	길	부여		야미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8	길	부여		야미도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9	길	부여		야미도4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0	길	부여		어청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41	길	부여		어청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2	길	부여		어청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143	길	부여		연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4	길	부여		연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5	길	부여		장자도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6	길	부여		장자도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7	길	부여		죽도길	섬이름 사용	옥도면
148	로	부여		새만금로	새만금방조제위 제방도로, 국도 77호선	옥도면
149	로	부여		고군산로	고려때부터 선유도를 포함 하여 고군산도라 함	옥도면
150	길	변경	남동길	남동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1	길	변경	닭메길	당매1길	닭모양 산이있어 닭메,현재 당매로 불림	옥서면
152	길	변경	장원길	선연장원길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서면
153	길	변경	송촌윗길	송촌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4	길	변경	옥선길	옥서서길	옥서면 서쪽에 위치, 송촌, 수라, 장전마을 통과	옥서면
155	길	변경	새말길	신동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6	길	부여		남동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7	길	부여		남동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8	길	부여		당매2길	닭모양 산이있어 닭메, 현재 당매 로 불림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9	길	부여		선연1길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60	길	부여		선연2길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61	길	부여		선연안길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62	길	부여		신동2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3	길	부여		신동3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4	길	부여		신동4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5	길	구간 조정		해망1길	동 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방도록 개설	해신동
166	길	구간 조정		해망2길	동 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방도록 개설	해신동
167	길	폐지		수덕산길	수덕산 인용	해신동
168	로	변경	콩나물고개	아리랑로	콩나물고개의 어감이 좋지 않고 예전 명칭이 아리랑고개임/ 주민의견	월명동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169	길	부여		창성길	동 명칭 사용	월명동
170	길	부여		석치길	지역명칭 사용	신평동
171	길	변경	고가서길	팔마동길	팔마산 동쪽에 위치한 도로	흥남동
172	길	구간 조정		서당길	옛지명/도시계획도로개설	구암동
173	길	구간 조정		대밭길	마을뒤쪽으로 대밭이 무성 하여인용/도시계획도로개설	개정동
174	길	구간 조정		사정길	동 명칭사용/소방도로개설	개정동
175	길	부여		미제남길	미제저수지 남쪽 방위사용	나운3동
176	길	부여		지산북길	지산길 북쪽에 위치	나운3동
177	길	부여		개사안1길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도로명변경동의서	나운3동
178	로	변경	군산새만금로	새만금북로	새만금 북쪽에 위치한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소룡동
179	길	부여		비응남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0	길	부여		비응6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1	길	부여		비응안6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2	길	부여		비응안7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3	길	부여		비응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4	길	부여		비응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5	길	부여		비응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6	길	부여		비응4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7	길	부여		비응5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8	길	부여		비응안1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9	길	부여		비응안2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0	길	부여		비응안3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1	길	부여		비응안4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2	길	부여		비응안5길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3	길	부여		요죽5길	옛지명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194	길	부여		생말4길	옛지명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195	길	부여		분말4길	옛지명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196	길	부여		군장산단안1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197	길	부여		군장산단안2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198	길	부여		군장산단안3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199	길	부여		군장산단안4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0	길	부여		군장산단9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1	길	부여		군장산단10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2	길	부여		군장산단11길	지역명칭에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3	길	부여		자유무역1길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간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4	길	부여		자유무역2길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간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5	길	부여		자유무역3길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간 서수번호사용	소룡동
206	로	부여		비응로	섬 이름 사용	소룡동
207	로	부여		비응남로	섬이름에 방위사용	소룡동
208	로	부여		비응동로	섬이름에 방위사용	소룡동
209	길	변경	옥선북길	옥선길	마을명칭 인용	미성동
210	길	변경	수송중앙로	동수송안길	수송중앙로단절	수송동
211	길	변경	동수송1길	동수송1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2	길	변경	동수송2길	동수송2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3	길	변경	동수송9길	동수송3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4	길	변경	동수송8길	동수송4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5	길	변경	동수송7길	동수송5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6	길	변경	동수송6길	동수송6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7	길	변경	동수송5길	동수송7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8	길	변경	동수송4길	동수송8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9	길	변경	동수송3길	동수송9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0	길	변경	수송중앙로	수송안길	수송중앙로단절	수송동
221	길	변경	수송안길	수송안1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2	길	변경	수송안9길	수송안2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3	길	변경	수송안7길	수송안3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4	길	변경	수송9길	수송안4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5	길	변경	수송안6길	수송안5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6	길	변경	수송안5길	수송안6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7	길	변경	수송안4길	수송안7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결정 도로명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228	길	변경	수송안3길	수송안8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9	길	변경	수송안2길	수송안9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30	길	변경	수송안1길	수송안10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31	길	변경	수송안길	수송안11길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주민의견수렴안	수송동

끝.

군산시 공고 제 2009-923호

## 「2009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2009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선도사업
- 사업기간 : 2009. 6월 ~ 11월
- 모집기간 : 2009. 5. 12. ~ 5. 18.
- 모집인원 : 1,30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 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 1일 33,000원 (임금의 30% 상품권 지급)  
4대 보험 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간식비 · 교통비 별도지원
- 사업내용 : 환경정비사업 등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009. 5.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931호

#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군산시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1.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용

수면번호	어업종류	품 종	면적(ha)	위 치	개발방법
①	해조류양식	김	240	방축도인근	한 정 면 허 (제5559호 포기조건)
②	"	김	440	선유도인근	한 정 면 허 (제5558호 포기조건)
③	"	김	20	"	한 정 면 허 (제5556호 포기조건)
④	"	김	10	관리도인근	한정면허
⑤	"	김	135	신시도인근	한 정 면 허 (제5518호 포기조건)
⑥	"	김	30	"	한정면허
⑬	마을어업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	80	개야도인근	일반면허
⑭	"	"	2	"	일 반 면 허 (제5447호 포기조건)
⑮	"	"	17	"	일 반 면 허 (제5228호 포기조건)
⑯	"	"	25	"	일 반 면 허 (제5229호 포기조건)
⑰	"	"	5	장자도인근	한정면허
⑱	"	"	10	선유도인근	한정면허
⑲	"	"	6	"	한정면허
⑳	"	"	5	"	한 정 면 허 (제5246호 포기조건)
㉑	"	"	25	"	한 정 면 허 (제5219호 포기조건)
㉒	"	"	17	"	한정면허
㉓	"	"	55	"	한 정 면 허 (제5222호 포기조건)

## 2. 어장개발의 제한조건

### 【새만금사업관련 해역】

- ①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이후 수질 환경변화(적조발생, 염도저하, 거품 띠, 공사로 인한 탁류등) 및 갑문조작 그리고 내부개발에 따른 공사 등에 따라 피해영향이 수반될 수도 있어,
- ② 어업권 면허 신청시 신청인에게 사전에 서면등으로 충분히 공지하고, 새만금사업에 따른 일체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조건을 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0조등에 의거 한정적으로 개발을 요함.
- ③ 어·패류 수송차량 및 운반선박은 새만금 공사구역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함.
- ④ 면허취소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1월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피 면허자의 부담으로 자진 철거해야함.
- ⑤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만금간척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의 취소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함.
- 추후, 면허권자는 위의 조건에 대한 공중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조건을 면허원부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수역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한 차기 면허연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협의 시 동어장은 배제할 계획임

###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가. 제출기한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2009. 5. 11 ~ 2009. 6. 10)

나.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창구

다. 제출서류

- 1)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산기술자에 한한다)
-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법 제15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6)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 기타사항

가. 수면별 승인된 어장위치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처 : 우리시 해양수산과 (☎ 450-4413)

2009. 5. 1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 - 932호

## 공 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5 .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군산해양경찰서 경무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사업시행지
    - ▷ 당 초 : 군산시 금동 14-1번지 → 변 경 : 군산시 금동 14-1번지외 3필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사업
    - 명칭 : 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 신축공사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 당 초 : 15,228.8㎡ → 변 경 : 15,908.0㎡(증679.2㎡)
    - 규 모
      - ▷ 당 초 : 지상5층, 지하2층(건축면적2,672.78㎡ 건축연면적8,523.51㎡)
      - ▷ 변 경 : 지상5층, 지하2층(건축면적2,235.09㎡ 건축연면적7,730.60㎡)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소룡동 9-9번지
    -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해양경찰서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1. 인가일 ~ 2009. 10. 31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금 동	14-1	대지	15,228.8	15,228.8	국 (해양경찰청)		-	-	-	
2		18	대지	12.6	12.6	국 (해양경찰청)					
3		19	대지	222.5	222.5	국 (해양경찰청)					
4		55-5	도로	444.1	444.1	국 (해양경찰청)					
합계		4필지		15,908.0	15,908.0						

4.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7), 주택과(450-4458), 군산해양경찰서 경무과(467-5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934호

## 2009년 통합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09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소재 불명, 수취인미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2009년 2차 통합숲가꾸기사업
2.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가치를 증대시키고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을 가꾸고자 함.
3. 사업량 : 166ha
4. 사업내용 : 천연림보육, 숲아베기(간벌),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5. 사업대상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6. 사업기간 : 2009. 05. ~ 08.
7. 공고기간 : 2009. 5. 13. ~ 2009. 6. 1(20일간)
8. 공고에 따른 조치 사항 :
  -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 나. 위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함.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0-4423,6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9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내역 1부.

군산시 공고 제2009 - 964호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 1. 개정이유

농산물수출 관련 업무 이관 및 농업·농촌 체험 등 기존 농촌관광업무가 소비자농업업무 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3. 주요내용

○ 업무분야 명칭변경 【별표1】

- ▶ 농촌지원과 농촌관광 업무분야 ⇨ 소비자농업 업무분야
- ▶ 기술보급과 수출특화 업무분야 ⇨ 소득작목 업무분야

## ○ 업무 분장사무표 조정 【별표1】

## ▶ 신규 분장사무

- 농촌지원과 - 농식품산업, 도시소비자농업 프로젝트, 농기계임대사업
- 기술보급과 - 쌀 품종판별, 쌀품질분석, 친환경양돈시설

## ▶ 과별 분장사무 일부 수정·보완·삭제

## ○ 농민상담소 일부 관할 구역 변경 【별표2】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지도기획 업무분야	1.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3. 센터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4.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시설, 토지, 물품 등) 5.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6. 지도 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 인력 관리 7. 농업기술공보 및 홍보 업무 추진 8. 농민상담소 운영 관리 9.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10. 센터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비자 농업 업무분야	11. 4H조직운영 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창업농,신규) 13. 농촌지도자육성 14.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해외연수 15. 도시와 농촌의 교류 16.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17. 산업기능요원 관리지도 18. 한국농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19. 은퇴, 귀농정착 상담 지원 20. 소비자대상 농업홍보 사업계획 및 평가 21. 지역농업축제 운영 22.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및 교류활동 23.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24.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지도 25. 농촌 어메니티 사업개발 보급 26. 도시민대상 농업테마체험관 운영 27. 기타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경영교육 업무분야	28. 농업전산화 DB구축,관리업무 29.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30.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및 농업경영체 컨설팅 31. 농가경영체 관리 및 시스템운영 32. 지역중점작목 경영분석 및 관측정보 제공 33. 수확후 관리기술, 농산물유통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 34. 농가소득조사, 분석, 입력 35. 농산물 이력관리사업 36. 축산물 e-비즈니스 농업인지도 및 관련업무 37. 농업인교육 총괄 및 실행 38. 농업경영, 농업통계, 농업정책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상담 39.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40. 기타 경영교육에 관한 사항
	생활자원 업무분야	41.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42.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 43.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4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45.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 46.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개선 시범 47. 지역특화작물 가공산업 육성 48.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 및 농산가공 지원센터운영 49. 향토식품 육성 및 품질향상기술지원 50. 안전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보급 51.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작물환경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2.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li> <li>3. 맥류재배 기술지도</li> <li>4. 발작물관리 지도</li> <li>5.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li> <li>6. 증식답 운영</li> <li>7. 쌀 품질관리실 운영</li> <li>8.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지원</li> <li>9.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li> <li>10.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지도</li> <li>11.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li> <li>12. 병해충진단실 운영</li> <li>13. 기상장비 및 농업기상 자료지원</li> <li>14. 종합검정실 운영</li> <li>15.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li> <li>16. 시비 및 토양비료관련 기술지도</li> <li>17.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소득작목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li> <li>19. 원예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li> <li>20.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li> <li>21.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li> <li>22.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li> <li>23.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li> <li>24. 소득작목 농가실증 시험재배 추진</li> <li>25.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실증시험 및 지도</li> <li>26.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도</li> </ol>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 장	연구개발 업무분야	27. 새기술 실증 시범 28. 농업인기술개발사업 29.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 30.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31.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 33.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4. 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 35.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 36.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

[별표 2]

## 농민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구상담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산상담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회현상담소	군산시 회현면	회현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대야상담소	군산시 대야면	대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임피상담소	군산시 임피면	임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서수상담소	군산시 서수면	서수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개정상담소	군산시 개정면	개정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성산상담소	군산시 성산면	성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나포상담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서상담소	군산시 옥서면	옥서면, 옥도면 일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미성상담소	군산시 산북동	미성동, 소룡동 나운3동 일부(신관, 개사동)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동상담소	군산시 시내동지역	구암, 수송, 사정동, 개정동, 나운2,3동 등 동지역

#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	-------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지도기획 업무분야	1.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3. 센터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4.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시설, 토지, 물품 등) 5.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6. 지도 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 인력 관리 7. <u>농업기술공보 업무 추진</u> 8. <u>인쇄물 교재 발간 및 활용</u> 9. <u>농민상담소 운영 관리</u> 10. <u>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u> 11. 센터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지도기획 업무분야	1.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3. 센터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4.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시설 토지 물품 등) 5.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6. 지도 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 인력 관리 7. <u>농업기술공보 및 홍보 업무 추진</u> 8. <u>농민상담소 운영 관리</u> 9. <u>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u> 10. 센터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b>【농업기술센터 소관】</b>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b>【농업기술센터 소관】</b>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농촌관광 업무분야	12. 4H조직운영 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변경) 14. 농촌지도자육성(변경) 15. 농업인해외연수(변경) 16. 도시와 농촌의 교류 17. 농촌관광 네트워크 및 교육농장 시범사업 18.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19. 기타 농촌관광에 관한사항	농촌지원 과 장	소비자농업 업무분야	11. 4H조직운영 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 (창업농,신규) 13. 농촌지도자육성 14.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해외 연수 15. 도시와 농촌의 교류 16.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17. 산업기능요원 관리지도 18. 한국농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리 19. 은퇴, 귀농정착 상담 지원 20. 소비자대상 농업홍보 사업 계획 및 평가 21. 지역농업축제 운영 22.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및 교류활동 23.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24.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지도 25. 농촌 어메니티 사업개발 보급 26. 도시민대상 농업테마체험관 운영 27. 기타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b>현</b>	<b>개 정 안</b>
----------	--------------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경영교육 업무분야	20. 농업 경영개선 지도
		21. 농업 전산화 DB구축 업무
		22. 농업인영농교육(신설)
		23.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24. 원격영농상담 및 교육
		25.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현장지도
		26.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및 농 업경영체 컨설팅
		27. 농가소득조사, 분석, 입력
		28. 지역중점작목 경영분석 및 관측정보 제공
		29. 농업경영, 농업통계, 농업정 책에 관한 상담
		30. 농업관련 여론조사 및 농정 모니터 요원 운영
31. 기타 경영교육에 관한 사항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경영교육 업무분야	28.농업전산화 DB구축 관리업무
		29.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30.농가경영 기초컨설팅 및 농 업경영체 컨설팅
		31.농가경영체 관리 및 시스템운영
		32.지역중점작목 경영분석 및 관측정보 제공
		33.수확후 관리기술, 농산물유통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
		34.농가소득조사, 분석, 입력
		35.농산물 이력관리사업
		36.축산물 e-비즈니스 농업인 지도 및 관련업무
		37.농업인교육 총괄 및 실행
		38.농업경영, 농업통계, 농업정 책에 관한 자료조사 및 상담
39.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40. 기타 경영교육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b>【농업기술센터 소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관과소장</th> <th style="width: 10%;">업무분야</th> <th style="width: 80%;">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지원 과 장</td> <td rowspan="1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활자원 업무분야</td> <td>32.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td> </tr> <tr> <td>33.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td> </tr> <tr> <td>34. 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계승</td> </tr> <tr> <td>35.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친환경주거모델 시범</td> </tr> <tr> <td>36.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td> </tr> <tr> <td>37.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및 농산물 가공지도</td> </tr> <tr> <td>38.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td> </tr> <tr> <td>39.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td> </tr> <tr> <td>40.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td> </tr> <tr> <td>41.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td> </tr> <tr> <td>42.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td> </tr> <tr> <td>43. 도시소비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td> </tr> <tr> <td>44. 도시민대상 농업테마체험관 운영</td> </tr> <tr> <td>45.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생활자원 업무분야	32.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33.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34. 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계승	35.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친환경주거모델 시범	36.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37.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및 농산물 가공지도	38.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39.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40.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	41.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	42.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	43. 도시소비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44. 도시민대상 농업테마체험관 운영	45.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b>【농업기술센터 소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관과소장</th> <th style="width: 10%;">업무분야</th> <th style="width: 80%;">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1"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농촌지원 과 장</td> <td rowspan="11"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활자원 업무분야</td> <td>41.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td> </tr> <tr> <td>42.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td> </tr> <tr> <td>43.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td> </tr> <tr> <td>4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td> </tr> <tr> <td>45.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td> </tr> <tr> <td>46.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td> </tr> <tr> <td>47. 지역특화작물 가공산업 육성</td> </tr> <tr> <td>48.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 및 농산가공지원센터운영</td> </tr> <tr> <td>49. 향토식품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td> </tr> <tr> <td>50. 안전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보급</td> </tr> <tr> <td>51.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생활자원 업무분야	41.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42.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3.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4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45.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	46.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	47. 지역특화작물 가공산업 육성	48.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 및 농산가공지원센터운영	49. 향토식품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	50. 안전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보급	51.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생활자원 업무분야	32.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33.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34. 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계승																																						
		35.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친환경주거모델 시범																																						
		36.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37.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및 농산물 가공지도																																						
		38.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39.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40.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																																						
		41.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																																						
		42.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																																						
		43. 도시소비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44. 도시민대상 농업테마체험관 운영																																						
		45.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농촌지원 과 장	생활자원 업무분야	41. 생활자원 사업의 계획 및 평가																																						
		42.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43.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4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촉진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45.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지원																																						
		46. 농작업 안전 및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																																						
		47. 지역특화작물 가공산업 육성																																						
		48. 농업인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지원 및 농산가공지원센터운영																																						
		49. 향토식품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지원																																						
		50. 안전식생활 정보제공 및 전통·향토음식 보급																																						
		51. 기타 생활자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작물환경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li> <li>2. 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 쌀품질관리실 운영</li> <li>3. 농약 안전사용지도</li> <li>4. 병충해 예찰, 관찰포 운영 및 방제 지도 관련 업무</li> <li>5. 식량작물 신품종 및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증식답운영</li> <li>6. 정부보급종 공급</li> <li>7. 농업기상 관측 및 기상재해에 관한 농작물관지도</li> <li>8. 농업토양 검정 및 개량관련 지도업무</li> <li>9. 기타 농업 환경 및 식량 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li> <li>10. 친환경농산물 재배관련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li> <li>11.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기술보급 과장	작물환경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li> <li>2.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li> <li>3. 맥류재배 기술지도</li> <li>4. 발작물관리 지도</li> <li>5.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li> <li>6. 증식답 운영</li> <li>7. 쌀 품질관리실 운영</li> <li>8.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지원</li> <li>9.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li> <li>10.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지도</li> <li>11.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li> <li>12. 병해충진단실 운영</li> <li>13. 기상장비 및 농업기상 자료지원</li> <li>14. 종합검정실 운영</li> <li>15.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li> <li>16. 시비 및 토양비료관련 기술지도</li> <li>17.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과소장</th> <th>업무분야</th> <th>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4">기술보급 과장</td> <td rowspan="14">수출특화 업무분야</td> <td>12.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td> </tr> <tr> <td>13. 채소 재배 기술 지도</td> </tr> <tr> <td>14. 과수 재배 기술 지도</td> </tr> <tr> <td>15. 화훼 재배 기술 지도</td> </tr> <tr> <td>16. 지역특화 및 새 기술 시범 사업 지도</td> </tr> <tr> <td>17.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td> </tr> <tr> <td>18. 산채류 재배 기술지도</td> </tr> <tr> <td>19. 소득 개발 특화 사업 지도</td> </tr> <tr> <td>20. 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td> </tr> <tr> <td>21. 기타 경제작물에 관한 사항</td> </tr> <tr> <td>22. 수출농업육성 및 수출촉진지도</td> </tr> <tr> <td>23. 새소득작목 농가실증시험재배 지도</td> </tr> <tr> <td>24.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육성</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수출특화 업무분야	12.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13. 채소 재배 기술 지도	14. 과수 재배 기술 지도	15. 화훼 재배 기술 지도	16. 지역특화 및 새 기술 시범 사업 지도	17.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18. 산채류 재배 기술지도	19. 소득 개발 특화 사업 지도	20. 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21. 기타 경제작물에 관한 사항	22. 수출농업육성 및 수출촉진지도	23. 새소득작목 농가실증시험재배 지도	24.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육성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과소장</th> <th>업무분야</th> <th>분 장 사 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기술보급 과장</td> <td rowspan="12">소득작목 업무분야</td> <td>18. 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td> </tr> <tr> <td>19. 원예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td> </tr> <tr> <td>20.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td> </tr> <tr> <td>21.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td> </tr> <tr> <td>22.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td> </tr> <tr> <td>23.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 술 지도</td> </tr> <tr> <td>24. 소득작목 농가실증 시험재 배 추진</td> </tr> <tr> <td>25.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실증 시험 및 지도</td> </tr> <tr> <td>26.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 술지도</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소득작목 업무분야	18. 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	19. 원예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20.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21.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	22.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	23.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 술 지도	24. 소득작목 농가실증 시험재 배 추진	25.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실증 시험 및 지도	26.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 술지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수출특화 업무분야	12.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13. 채소 재배 기술 지도																																												
		14. 과수 재배 기술 지도																																												
		15. 화훼 재배 기술 지도																																												
		16. 지역특화 및 새 기술 시범 사업 지도																																												
		17.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18. 산채류 재배 기술지도																																												
		19. 소득 개발 특화 사업 지도																																												
		20. 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21. 기타 경제작물에 관한 사항																																												
		22. 수출농업육성 및 수출촉진지도																																												
		23. 새소득작목 농가실증시험재배 지도																																												
		24.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육성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소득작목 업무분야	18. 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																																												
		19. 원예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20. 시설원예 재배 기술지도																																												
		21. 시설작목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절감 실증 기술지도																																												
		22. 과수, 화훼 재배기술 지도																																												
		23. 약용작물, 특용작물 재배기 술 지도																																												
		24. 소득작목 농가실증 시험재 배 추진																																												
		25.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실증 시험 및 지도																																												
		26.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기 술지도																																												

현행			개정안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과소장</th> <th>업무분야</th> <th>분장사무</th> </tr> </thead> <tbody> <tr> <td>기술보급과장</td> <td>연구개발업무분야</td> <td>                     25. 새 기술 실증 시범                      26. 현장애로 기술 개발                      27. 새소득작목개발 및 시험연구(변경)                      28.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 보급                      29.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실 운영(변경)                      30.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1.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2. 축산시범사업 추진                      33. 사료작물 및 초지조성 시범사업 관리지도                      34.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업무분야	25. 새 기술 실증 시범 26. 현장애로 기술 개발 27. 새소득작목개발 및 시험연구(변경) 28.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 보급 29.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실 운영(변경) 30.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1.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2. 축산시범사업 추진 33. 사료작물 및 초지조성 시범사업 관리지도 34.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p>[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p> <p>【농업기술센터 소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과소장</th> <th>업무분야</th> <th>분장사무</th> </tr> </thead> <tbody> <tr> <td>기술보급과장</td> <td>연구개발업무분야</td> <td>                     27. 새기술 실증 시범                      28. 농업인기술개발사업(신규)                      29.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신규)                      30.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31.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신규)                      33.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4. 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변경)                      35.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신규)                      36.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신규)                 </td> </tr> </tbody> </table>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업무분야	27. 새기술 실증 시범 28. 농업인기술개발사업(신규) 29.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신규) 30.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31.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신규) 33.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4. 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변경) 35.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신규) 36.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신규)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업무분야	25. 새 기술 실증 시범 26. 현장애로 기술 개발 27. 새소득작목개발 및 시험연구(변경) 28.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 보급 29.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실 운영(변경) 30.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1.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2. 축산시범사업 추진 33. 사료작물 및 초지조성 시범사업 관리지도 34. 가축위생 및 방역 기술지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업무분야	27. 새기술 실증 시범 28. 농업인기술개발사업(신규) 29.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신규) 30.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31.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신규) 33.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4. 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변경) 35.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신규) 36.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신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농민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별표 2] 농민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구상담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구상담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산상담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산상담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회현상담소	군산시 회현면	회현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회현상담소	군산시 회현면	회현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대야상담소	군산시 대야면	대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대야상담소	군산시 대야면	대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임피상담소	군산시 임피면	임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임피상담소	군산시 임피면	임피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서수상담소	군산시 서수면	서수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서수상담소	군산시 서수면	서수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개정상담소	군산시 개정면	개정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개정상담소	군산시 개정면	개정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성산상담소	군산시 성산면	성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성산상담소	군산시 성산면	성산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나포상담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나포상담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서상담소	군산시 옥서면	옥서면, 옥도면 일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옥서상담소	군산시 옥서면	옥서면, 옥도면 일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미성상담소	군산시 산북동	미성동, 소룡동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미성상담소	군산시 산북동	미성동, 소룡동 나운3동 일부 (신관 개사동)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동상담소	군산시 시내 동지역	구암, 수송, 사정동, 개정동, 나운 2동 등 동지역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동상담소	군산시 시내 동지역	구암, 수송, 사정동, 개정동, 나운 2동 등 동지역